

제 418 호

1973. 12. 3.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편집 : 문화공보실장 김진호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보

차 례

이	광	보	출	판	이	크	로
제	179	호	:	도	시	계	획
제	180	호	:	일	단	의	수
제	181	호	:	도	시	계	획
제	183	호	:	도	시	계	획

◎고 시

제 179 호 : 도시 계획시설 (운동장) 결정및지적승인..... 3

제 180 호 : 일단의수택지조성사업시설 및

실시계획변경 3

제 181 호 : 도시 계획시설 (도로) 일부변경및지적승인..... 5

제 183 호 : 도시 계획사업 (지하철도) 실시 계획인가 5

◎공 고

제 221 호 : 분묘이장공고 10

◎사 령 10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179호

도시계획시설(운동장)
결정및지적승인

1. 도시계획시설(운동장정구장) 결
정과 지적승인을 다음과같이 하였기

도시계획법제 12조 및 제 13조의 규
정과 건설부 고시제 434 호 (73.11.5)
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 설	운동장(정구장)	시내관악구신림동133부근	6,000(1,815평)	

별첨: 도면표시와같음(도면생략) 도면은

1973. 11. 26

당시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에보관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고시제 180호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설
및 실시계획변경

1. 서울특별시 고시제 36 호 (71. 5.
12) 로 실시계획인가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의 시설및 지적승인과 실시제
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 도시제
획법제 12조 제 13조 제 25조 및 제 26
조와 건설부 고시제 434 호 (73.11. 5)
의 권한위임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1. 사업시행지: 시내관악구 신림동산
161-2 의 8 필지

2. 사업의종류: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

3. 면 적: 23,732 평

4. 시행자 주소성명: 시내용산구 이
춘동 300-23 강 병 두

5. 사업기간: 착공 71. 5. 20

준공예정기한: 73. 12. 20

6. 시설(가로망) 변경조서

1973. 11. .

서울특별시장

구분	등급	류별	번 호	목원	연 장	기 점	종 점	비 고
기 정	소로	1	10-1	10	165	신림동 409-1	신림동산 161-6	
변경	"	1	"	10	210	"	"	연장확대
기정	"	3	6-1	6	136	산 161-6	산 161-6 우측	
변경	"	3	"	6	132	"	"	연장축소및 위치변경
기정	"	3	6-3	6	348	산 161-5(소 6-4)	산 161-6(소 6-2)	
변경	"	3	6-3	6	350	신림동산 161-5(소 6-8)	"	연장확대및 위치변경
기정	"	3	6-4	6	370	산 161-5	"	
변경	"	3	6-4	6	320	산 161-5(소 6-8)	"	연장축소
기정	"	3	6-5	6	322	"	"	
변경	"	3	6-5	6	319	"	"	연장축소
기정	"	3	6-6	6	326	"	"	
변경	"	3	6-6	6	323	"	"	연장축소
기정	"	3	6-7	6	162	신림동 409-3(소 6-1)	신림동산 161-5(소 6-3)	
변경	"	3	6-7	6	156	"	"	연장축소
기정	"	3	6-8	6	124	신림동 408-3	산 161-5(소 6-4)	
변경	"	3	6-8	6	164	"	산 161-5	연장확대
신설	"	3	6-9	6	15	소 6-8	인접단지	신설

별첨: 도면표시와같음(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및 관할구청시만봉사실에
보관

◎ 서울특별시고시제 181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일부변경 및 지적승인

1. 당사관내 도시계획시설 (도로) 을
다음과 같이 일부변경 및 지적승
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와 건설부 고시제 123
호 (73.4.4) 의 규정에 의하여

로 선 조 서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및 승인출장
소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
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3. 11. 26.

서울특별시장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소로	2	23	8	436	응암동	70-2	응암동	42-7		
폐지	소로	2	23	8	180	응암동	42-31	응암동	42-7		
기정	소로	3	140	6	96	응암동	41-1	응암동	44		
폐지	소로	3	"	6	96	응암동	41-3	응암동	44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및 출장소에 보관함.

서울특별시고시제 183 호

도시계획사업 (지하차도)
실시계획인가

1. 건설부고시 제 381 호 (67.5.24)
로 결정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지하차도)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 조와 동법 제 26 조 및 건설
부 고시 제 123 호 (73.4.4)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한강건설
사업소와 영등포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3. 11. 27.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의위치 : 영등포구 영등포동 1가 지내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 1973.12.10 - 1973.12.31.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영등포 입체교차로 (철도횡단지하차도) 시설 공사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 지, 지번, 지목 및 건물조서, 소유자와 소유권 이외의 관계인의 주소성명 : 별첨 참조
3. 면적 또는 규모 : 폭 14미터 연장 246미터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인 가 증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영등포구 영등포동 1가 지내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영등포입체교차로 (철도횡단지하도) 시설공사
3.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4. 인가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83 호
5. 사업기간 : 73.12.10 - 73.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자와
소유권 이외의 관계인의 명세 ; 별첨.
- 위와같이 아래조건을 부여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제 10 조 건설부
고시 제 123 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사업실시계획을 별첨 설계도와
같이 인가함.

1973. 11. 27

서울특별시장

인 가 조 건

1. 사업실시 완료 후 지체없이 사업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별첨 계략설계도 (평면도) 에 의하여 시공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토 지 조 서										
순 위	소재지	분 할 전 표 시			분 할 후 표 시 (수용대상)			소 유 자		관계 인
		지 번	지 목	지 적	지 번	지 목	지 적	주 소	성 명	
1	영등포1가	94-2	대	1,311.7	94-3	대	80.8	영등포동2가8	김 정 순	외 50인
2	"	61-1	"	10.5	61-3	"	5.6	" 63	박 봉 춘	
3	"	61-2	"	10.5	61-4	"	6.9	" 53	이 영 호	
4	"	62	"	12.1	62-2	"	8.2	" 63	함 덕 근	
5	"	63	"	194.2	63-2	"	28.6	" 85	김 광 식	외 8인
6	"	96	"	135	96-2	"	22.8	신길동188	최 형 운	외 7인
7	"	109	"	69.3	109-2	"	21.5	목산동3	이 복 규	외 2인
8	"	105	"	97.5	105-2	"	31.7	영등포동1가93	조 성 규	외 5인
9	"	104	"	31.9	104-2	"	17.2	영등포동1가104	최 영 신	
10	"	103	"	35.8	103-2	"	15.8	영등포동1가123 문배동30-10	이 천 만 동양제과	
11	"	120-1	"	20.3	120-1	"	20.3	남대문로1가14	조 홍 은행	
12	"	120-2	"	100	120-4	"	8.5	"	"	
13	"	121	"	724	121-2	"	26.9	"	"	
		294.8								

건 물 조 서							
순 위	소 재 지	지. 번	구 조	총평수	수용 면적	소 유 자	성 명
1	영등포동1가	94-3	(육옥조) 콘크리트연와조	① 51.78	15	당산동 4 가 1 의 2	김 성 준
			"	② 51.12	15	"	"
2	"	"	연 와 조 평 옥	개 ① 9.56	9	영등포동 1 가 94	최 봉 운
			"	② 9.56	9	"	"
3	"	"	목 조 와 층	① 14.4	10	"	김 승 문
			"	② 14.4	10	"	"
4	"	"	"	① 8.5	10.3	영 등 포 동 1 가 94-2	이 옥 들
			"	② 7.5	10.3	"	"
5	"	"	"	① 3.5	9.3	" 94-3	이 화 영
			"	② 3.5	9.3	" "	"
6	(공 지)						
7	영등포동1가	94-3	목 조 와 집	① 19.2	14	"	이 용 담
			"	② 19.2	14	"	"
8	"	61-3	목 조 와 층	① 10.5	10	" 94-2	박 봉 춘
9	"	61-4	"	① 10.5			이 영 호
10	"	62-2	"	① 10.4	10.7	" 63-3	함 덕 근
11	"			② 10.4	10.7	"	"
12	"	63-2	"	① 8	8.7	" 63-2	김 은 분
			"	② 8	8.7	"	"
13	"	63-2	"	① 8	8.7	"	김 광 식
			"	② 8	8.7	"	"
14	"	"	"	① 8	8.7	영 등 포 동 1 가 63-2	김 치 중
			"	② 8	8.7	"	"
15	"	121-2	철근콘크리트조	① 59	20		조 홍 은행
	"	"	"	② 59	20		"

순 위	소재지	지번	구 조	총평수	수용 면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16	영등포동1가	120-1	목조스레트조	①13	19		조흥은행
17	"	120-4	연와조와즙	①25	8.0		"
				②25	8.0		"
18	"	103-2	목조와즙	①15	15.8		유응선
				②15	15.8		"
19							
20	"	104-2	연와조와즙	①19.44	18	영등포동1가104-1	최영신
21				②11.78	18	"	최영빈
22	"	105-2	목조와즙	①23	11.98	" 105-2	최명길
23				②8	7.98	"	"
24							
25							
26							
27	"	105-2	목조와즙	①19	22.8	" 105-2	한상복
28		109-2		①11	22.8	" 109-2	"
29							
30	(공지)						
31	영등포동1가	109-2	목조와즙	①3	5.9	" 109-1	백선비
				②3	5.9		최실만
32	"	96-2	"	①9	5.4	96	이봉금
				②9	5.4	96	"
33	"	"	"	①9	5.4	96	이충영
		"	"	②9	5.4	96	"
34	"	"	"	①23	9	영등포구독산동482-3	서문화
				②17	9	"	"

* 범례 ; ①..... 1층, ②..... 2층

공 고

◎서울특별시 공고제 221 호

분 묘 이 장 공 고

당시에서 시공중인 화양추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역내에 매장분묘에 대하여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제 15조 및 제16조제 2 항 동 법 시행규칙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이장할것을 공고한다.

1. 이 장 대 상 지 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양동 19, 20, 21 22 산 6, 산 7, 산 8 번지일대

2. 다만 연고자는 반드시 당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 1과 또는 위사업을 주관하는 공사현장감독관 사무실에 비치된 관계도서상 사업지구내에 포함되어있는지를 확인하여 포함되어있으면 이장신고를 필한후 이장하여 주시고 이장완료후 소정의 보상비를 지급받으시기 바람.

3. 신고 및 이장기간; 1973.11.30 ~ 1973.12.30. (1) 개월간

4. 만일 위 기간내 사업지구내 소제한 분묘를 이장치 않을때에는 부연분묘로 간주하고 당시에서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의 정하는바에 따라 임의 이장하겠음.

1973. 11.

서울특별시장

사 명

◎1973.11.25

성북구보건소 지방보건원 박 지 훈

73.11.16 서울특별시 지방

공무원 소청심사 위원회의 결

정에 따라 73.2.23 자 감

봉 6 월 처분을 동일자로 변

경절책에 처함.

◎1973.11.28

도시가스 지방화공 주 연 용
사업소 기사보시보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영등포구보 지방행정 박 유 훈
진소(휴직중) 주 사
복직을 명함.

영등포구보건소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건축 사무소 김 금 태 주택건설과 파견근무를 해제함. 중도사업소 지방토목 사무소 김 규 영 수도관리사업소 파견 (74.3.21 까지) 근무를 명함. 성대문구 지방토목 사무소 정 구 부 구획정리 1 과 파견 (73.12.31 까지) 근무를 명함. 북악공원 지방토목 관리사무소 김 무 현 구획정리 1 과 파견 (73.12.31 까지) 근무를 명함. 영등포병원 지방간호 기원보시보 여 은 희 본인 불출두로 인하여 73.11. 20 자 신규임용발령을 동일자로 취소함. © 1973.11.29. 도시가스 지방행정 사업소 서 기 보 이 두 발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2 호의 규 정에 의하여 감봉 1 월에 처함. 설북구 근무를 명함. 성동구 지방행정 수도사업소 서 기 보 이 수 택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2 호의 규 정에 의하여 파면에 처함. 성북구 지방행정 수도사업소 서 기 보 전 용 우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2 호의 규 정에 의하여 견책에 처함. 성동구 근무를 명함. 종로구 지방행정 주사보 신 강 한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2 호의 규 정에 의하여 감봉 3 월에 처함. 종로구 지방행정 서 기 보 임 영 수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2 호의 규 정에 의하여 견책에 처함. 관악구 근무를 명함. 중구 지방행정 주사보 신 두 봉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2 호의 규 정에 의하여 감봉 1 월에 처함. 중구 지방행정 서 기 보 김 용 효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2 호의 규 정에 의하여 견책에 처함. 중구 지방행정 서 기 보 지 영 성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2 호의 규 정에 의하여 견책에 처함. 도봉구 근무를 명함.
---	---

규정에 의하여 건책에 처함.

성동구 근무를 명함.

성북구 지방행정
주 사 보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1 월에 처함.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중로구 지방건축
기 사 보

73.11.20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73.8.18 자 파면처분 (발령제

790 호) 을 동일자로 변경

감봉 3 월에 처함.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용산구 지방행정
주 사 보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심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73.7.24

일자 징계처분 (발령제 949 호, 감

봉 1 월) 을 동일자로 변경 건책

에 처함.

성북구 지방행정
수도사업소 주 사 보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심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73.9.24

자 징계처분 (발령제 949 호, 감봉

6 월) 을 동일자로 변경 건책에

처함.

소년기술원 지방행정
주 사 보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심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73.8.20

자 면직처분을 (발령제 819 호)

종일자로 취소함.

한강전설사업소 근무를 명함.

◎ 1973.12.1.

조경과 지방건축
기 사 보

복직을 명함.

2 호봉을 급함.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김진홍

지방건축기사보시보에 임함.

1 호봉을 급함.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정재식

지방건축기사보시보에 임함.

1 호봉을 급함.

영선과 근무를 명함.

양용호

지방건축기사보시보에 임함.

1 호봉을 급함.

영선과 근무를 명함.

박종기 지방건축기사보시보에 임함.	연료과 (석유류 대책본부) 파견 (73.12.1 - 73.12.31 까지)
1 호봉을 급함. 영선과 근무를 명함.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행정 사무소
성북구 지방행정 사무소 김동규 주택행정과 파견 (73.12.31	연료과 (석유류 대책본부) 파견 (73.12.1 - 73.12.31 까지)
까지) 근무를 명함. 마포구 지방행정 사무소 서후석	근무를 명함. 도시가스 지방행정 사무소 김석홍
성동구 파견근무를 명함. 중구 지방행정 사무소 조영현	연료과 (석유류 대책본부) 파견 (73.12.1 - 73.12.31 까지)
마포구 근무를 명함. 성북구 지방행정 사무관 안석봉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행정 사무소 배종옥
서대문구 세무 2 과장에 보함. 이영재	성북구 근무를 명함. 김일청
지방행정사무관시보에 임함. 1 호봉을 급함.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2 호봉을 급함.
성북구 시민봉사실장에 보함. 건설행정과 지방행정 사무관 이충길	종로구 근무를 명함. 김용근
연료과 (석유류 대책본부) 파견 (73.12.1 - 73.12.31 까지)	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 임함.
근무를 명함. 영동출장소 지방행정 사무관 임우빈	1 호봉을 급함.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윤 윤 익 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 임함. 1 호봉을 급함. 천호출장소 근무를 명함. 최 완 섭 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 임함. 1 호봉을 급함.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2 호봉을 급함.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강원도고성군 재무과 지적기원 김 중 경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 전입을 명함. 지방지적기원에 임함. 3 호봉을 급함. 성북구 근무를 명함. 가평군 농촌지도원 박 수 중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 1973.12. 2. 종로구 지방행정기 김 일 청 문화공보실 파견 근무를 명함. ◎ 1973.12. 5. 충청북도 치척기원보 최 중 수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지적기원보에 임함.	농촌지도원에 임함. 4 호봉을 급함. 농촌지도소 근무를 명함. 서울철도국 지방철도원 하 일 주 간현역 9 등 급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 전입을 명함. 지방철도원 9 등급에 임함. 6 호봉을 급함. 지하철건설본부 근무를 명함.
서 울 특 별 시 장	